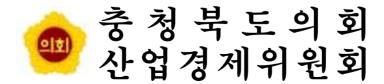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45회 임시회 '16. 2. 4. (목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333 2016. 2. 4.(목) 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월 26일

(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-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이의영 의원)
 - 가. 제안이유
 - 최근 대기업이 대형마트, SSM 등에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
 - 나. 주요내용
 - 조례 목적에 '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' 추가(안 제1조)
 - 위원회의 기능 중 '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' 추가(안 제2조)

- 위원회의 구성 위촉대상자 추가(안 제3조)
 -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, 전통시장대표 및 슈퍼마켓대표
-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 추가(안 제8조)
- 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 - '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대기업이 대형마트, SSM 등에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없 음"
- 5. 토 론 요 지: "없 음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 의견 요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소비자 권익증진 시책"을 "소비자 권익증진 시책, 소상 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"로 한다.

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
- 제3조제3항 중 "지역경제와"를 "지역경제, 소상공인과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6.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, 전통시장대표 및 슈퍼마켓대표

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소상공인경쟁력분과위원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경제	제1조(목적)
활성화, 지방공공요금의 조정,	
물가안정 시책, 유통산업간의 분	
쟁조정, 유통·물류시책, <u>소비자</u>	소비자 권익증
권익증진 시책 등을 심의하기	진 시책,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
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	<u> 경쟁력 강화</u>
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	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	
로 한다.	
제2조(기능)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	제2조(기능)
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	
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(신 설)	8.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
	업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	<u>9.</u>
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	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생 략)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③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 권익	③
증진, 유통, 물류, 물가, <u>지역경</u>	지역
<u>제와</u> 관련된 실·국장으로 하고	<u>경제, 소상공인과</u>
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	
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	
촉하는 자로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(신 설)	6.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, 전통시장대표 및 슈퍼마켓대표
제4조 ~ 제7조(생 략)	제4조 ~ 제7조(현행과 같음)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를 효	제8조(분과위원회) ①
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	
각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	
할 수 있다.	 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(신 설)	7. 소상공인경쟁력분과위원회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